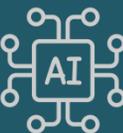


제4기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에너지신산업 분야 -



CONTENTS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해당 자료는 '21~'23년 內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및 회신 받은 내용과, '23년도 3월 소관부처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에너지신산업 분야 (3건)

- 태양광 발전소 안전관리자 상주 고용 기준 완화
-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기반의 전기안전관리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술 운영 허용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규정 內 파열시험 용기 사용 및 재시험에 대한 일관성 확보

태양광 발전소 안전관리자 상주 고용 기준 완화

에너지신산업 분야

애로내용

전기설비 용량 1MW 이상, 3M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에 상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위험 수준 대비 규제비용 부담 과중한 사항이며, 원격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용량에도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영위의 어려움으로 작용

건의결과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대행범위를 확대하고(1MW->3MW),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21.4).

*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 제정('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기반의 전기안전관리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술 운영 허용

에너지신산업 분야

애로내용

분산형 연료전지발전 시설 운영 시,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자를 배치할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만을 선임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 상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 규모 기준이 낮아 불필요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이 요구되고 있음

건의결과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 대행 허용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건의사항 수용, 추후 재논의 예정

* 업계 의견 수렴후 개정 추진 예정 (중장기검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규정 內 파열시험 용기 사용 및 재시험에 대한 일관성 확보

에너지신산업 분야

애로내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파열시험의 재시험 시 용기 선정 방식이 일관성이 없으며 불량 용기의 범위가 특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배치 내 정상적인 용기까지 전부 폐기하게 하여 생산 단계 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결과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4]* 압축수소가스에 대한 3.2.3.7 파열시험의 개정을 통해 내압용기 제작사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방지

* 국내·외 기술표준(ANSI HGV-2, KS B ISO 19881)과 동일한 사항으로 개정 예정 (~'24.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 (참고)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에서는
융합·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규제개선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행 현황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애로해소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670-9050" / "hyelim0507@kitech.re.kr"으로 문의
또는 <https://www.oico.kr/>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